

第216回国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3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18日(月)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WTO농산물협상제안서제출보고의건
2. 농작물재해보험법안(계속)
3.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계속)
4.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계속)
5. 畜産法中改正法律案(계속)
6. 畜産法中改正法律案(계속)
7. 畜産法中改正法律案(대안)
8.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계속)
9. 山林法中改正法律案(계속)
10. 山林法中改正法律案(계속)
11. 山林法中改正法律案(대안)
12.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계속)
13. 港灣法中改正法律案(계속)
14.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계속)
15.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16.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계속)
17. 漁港法中改正法律案(계속)
18.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계속)
19. 수산물품질관리법안(계속)

審査된案件

1. WTO농산물협상제안서제출보고의건 ..... 2
2. 농작물재해보험법안(정부제출)(계속) ..... 5
3.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5
4.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권오을·김기춘·신경식·이방호·이상배·주진우·허태열·김무성·윤한도·목요상·이규택·김용균·김용갑·박시균·정창화·이완구·하순봉·이상득·임인배·이재창·김찬우 의원 발의)(계속) ..... 5
5. 畜産法中改正法律案(장정언 의원 대표발의)(장정언·김경재·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덕배·김영진·김영배·김홍일·문석호·박용호·박인상·배기운·이낙연·유재건·윤철상·장성원·전갑길·정동채·정범구·정철기·조재환·최선영·함석재·허운나 의원 발의)(계속) ..... 5
6. 畜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5
7. 畜産法中改正法律案(대안) ..... 5
8.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5
9. 山林法中改正法律案(鄭長善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현욱·권오을·김영진·김택기·문석호·박용호

·박재욱·박희태·손태인·심규섭·원유철·원철희·이방호·장성원·장정언·주진우·최선영·함석재·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5
10. 山林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5
11. 山林法中改正法律案(대안) .....	5
12.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방호·장성원·장정언·정철기·정장선·문석호·강현욱·박용호·최선영·박희태·김용학·주진우·박재욱·이정일·김경천·김원기·전갑길·윤철상·정세균·이낙연·김효석·윤한도·김광원·이용삼의원 발의)(계속) .....	10
13. 港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4.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5.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6.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7. 漁港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8.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0
19. 수산물품질관리법안(정부제출)(계속) .....	10

(16시15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趙二濟**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錫宰** 수고했습니다.

## 1. WTO농산물협상제안서제출보고의견

(16시16분)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WTO농산물협상제안서제출보고의견을 상정합니다.

동 제안서를 보고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UR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1월부터 2001년3월까지 1단계 농산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그 달성방법 등에 대한 각 국의 제안서를 2000년12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韓甲洙 농림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9년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 출범을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농산물협상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다자간무역협상에 처음 다루어진 것이 UR협상이었고 UR협상을 종결하면서 농산물은

금년부터 추가 협상을 하도록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미 금년에 네 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며 금년 중에는 협상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각국의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서 제출 동향을 보면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EU와 일본 등 수입국들은 준비 중입니다. 12월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안서 준비작업을 마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12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거 UR협상 때에는 정부가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비판을 거울삼아 이번 우리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시·도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제안서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각계여론을 수렴하였고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서에서는 UR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의 농업을 위축시키고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업기반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그 결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농산물협상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관세 감축이나 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모든 나라가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안서는 주로 앞으로 논의될 협상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각국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협상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같이 금번 협상이 농산물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포함한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협상만이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과거의 UR협상과 비교할 때 최근 농산물 수출국들은 결속력이 다소 약화된 조짐을 보이는 반면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더 결속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에 관해 논리를 개발하고 지지국가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년 7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등 6개국의 공동주관으로 개도국들을 초청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결과를 9월 WTO 농업위원회에 27개국 공동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6일에는 EU와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서 46개국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상에서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계속 공조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에게 협상의 동향을 소상히 알리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농업국장으로서 하여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국제농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國際農業局長 崔龍圭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제출계획에 대해서 국제농업국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UR 농산물협상 결과를 보고드리면 UR협상은 86년9월에 시작하여 93년12월에 타결되고 95

년1월1일부터 WTO체제가 출범하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1월 1일부터 후속 협상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접근분야에서 수입수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은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하는 관세화제도를 도입하여 관세화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은 저율관세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동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때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95년에는 1%에서 2004년에는 4%까지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200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를 선진국은 6년간 36% 감축을 하고 개도국은 10년간 24%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 가격지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감축하고 구조조정이나 직접지불 등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보조분야에서 농산물 수출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선진국은 6년간 36%, 개도국은 10년간 24%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우리나라 제안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2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협상의 출범은 합의되지 못했으나 농산물협상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1월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의 목표와 달성방법에 대해 올해 12월말까지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16일 현재 미국·캐년즈그룹 등 수출국 중심으로 19개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EU와 일본 등 수입국들은 12월 중의 제출을 목표로 국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중에는 네 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의 작성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업현황을 감안한 제안서 초안을 9월말에 작성하여 우리 부의 자문기구인 농업통상정책협의회·농업통상자문단에서 일차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난 10월4일에서 13일까지 시·도별로 WTO 농산물협상 동향 및 제안서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받

영하기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마친 바 있으며 그 결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제안서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 UR 농산물협상은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식량원조의 감소 등으로 개도국의 식량안보 상황이 불안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식량수입개도국 입장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협상의 기본방향으로는 WTO 농산물협상은 다른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모든 나라가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각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환경보전·농촌개발 등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토록 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도국 우대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GMO 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UR 협상 이후의 여건과 상황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 분야별 제안으로는 먼저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에 있어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핵심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관세는 소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다양한 관세부과방법은 유지되어야 되고, 이미 UR에서 인정된 특별긴급관세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계절성이 있거나 부패가 쉬운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동조건 및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장접근물량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정 품목을 정하여 무관세를 추진하는 부문별 자유화는 반대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는 UR에서 결정한 국내보조의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되고,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인플레이의 영향을 반영토록 하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허용보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조, 농가소득안전망의 확충, 소규모 가족농의 지원,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출경쟁분야에서 우리와 같은 수입국에게 불리한 수출제한, 수출금지, 수출세 및 수출국 영무역에 대한 규율은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개도국 우대로서는 시장접근·국내보조·수출경쟁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의무를 보다 경감시켜야 되고, 식량원조·재정 및 기술지원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요 동조국가인 일본·EU 등의 동향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항 사항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金洪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春委員 이 안 13쪽에 보면 “e. 소비자 관심 사항 등”이라고 해 가지고 “27.”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성과 품질확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 WTO체제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WTO 협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감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많은 식품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지만 장차 수입을 하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WTO체제내에 조만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WTO체제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보다 단호한 어떤 응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도 이번에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

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인근 국가와 관련해서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유해한 식품들을 수출하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복이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WTO규약에 아주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27항이 들어간 것 같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국가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조치가 체제내에서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金洪春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가령 저희가 e항의 소비자 관심사항 등 새로운 과제는 주로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주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나 EU인데 미국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접국가간에 여기서 구체적인 국명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표현하는 그런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좋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제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께서 일부러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출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농작물재해보험법안**(정부제출)(계속)
- 3.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4.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이강두·권오을·김기춘·신경식·이방호·이상배·주진우·허태열·김무성·윤한도·목요상·이규택·김용균·김용갑·박시균·정창화·이완구·하순봉·이상득·임인배·이재창·김찬우 의원 발의)(계속)

- 5. **畜産法中改正法律案**(장정언 의원 대표발의)(장정언·김경제·김경천·김근태·김덕규·김덕배·김영진·김영배·김홍일·문석호·박용호·박인상·배기운·이낙연·유재건·윤철상·장성원·전갑길·정동채·정범구·정철기·조재환·최선영·함석재·허운나 의원 발의)(계속)

- 6. **畜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7. **畜産法中改正法律案**(대안)

- 8.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9. **山林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현욱·권오을·김영진·김택기·문석호·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심규섭·원유철·원철희·이방호·장성원·장정언·주진우·최선영·함석재·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 10. **山林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1. **山林法中改正法律案**(대안)

(16시34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제3항 인삼산업법 중개정법률안, 제4항 대표발의자 李康斗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 제5항 대표발의자 張正彦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제6항 정부가 제안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제7항 우리 위원회 대안인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제8항 정부가 제안한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제9항 대표발의자 鄭長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산림법중개정법률안, 제10항 정부가 제안한 산림법중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張誠源 위원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셨는데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代理 張誠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張誠源 위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가운데 오늘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풍 및 우박 등 빈발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농가소득안정망을 구축하여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농작물은 보험의 효율성과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농림부장관과 농작물재해보험업무의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효율성과 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보험대상작물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원안에 대하여 농작물의 피해규모와 농작물별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필요성 측면도 보험대상작물 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예산지원 및 책임준비금 적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어가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해서 李相培 의원님께서 지난 12월12일 발의하신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내용을 검토하였습시다라는 이 법 보험가입자의 대상에 이미 영농·영어조합법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별도의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康斗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법률안, 張正彦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안의 모체가 된 세 개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채택하여 국회법 제51조에 의하여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의무화하며 사업시행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안정자금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동 기금의 관리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축산농가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농협중앙회로 위탁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포함시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중국산 미삼·잡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오던 국내산 미삼·잡삼 등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일을 2001년3월1일에서 2001년7월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환경농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의 도입목적이 “소비자 보호”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이 법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입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외국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 지정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인증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鄭長善 의원 대표발의와 정부로부터 제안된 2건의 산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대안의 모체가 되는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의 제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방지하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산림형질 변경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 말씀을 올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張誠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誠源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사항 중 제정법률안인 제2항의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은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의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축조심사가 이루어진 조문임을 감안해서 수 개 조문을 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제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은 제1조 목적,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제3조 보험가입자, 제4조 보험대상 농작물 등 4개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은 제5조 보험사업자, 제6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7조 보험모집, 제8조 손해평가, 제9조 회계구분, 제10조 업무위탁 등 6개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春委員 재해가 있어서 농작물에 대한 보험법은 되었는데 여기 지금 농림부입니다마는 우리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양장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바다물고기를 키우는 데서 태풍이다, 해일이다 해서 자연재해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보험제도가 없어도 되는지, 한다면 우리가 항상 이 농어업을 같이 취급해 가지고 농어가부채문제라든지 농어업 발전이라든지 이것을 다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유독 농작물재해보험만 하고 수산물재해보험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기보다는 이런 법안을 제안하고 하는 소위원회나 이런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산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손해를 보았을 때는 말하자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같은 제1차산업인데 농민은 보험제도를 만들어 주고 어민은 보험제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문제를 제

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이 부분에 관해서는 權五乙 소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委員** 제가 조금 추가해서 부연을 드리면 지난번 가령 사오마이 태풍이다 이렇게 되면 낙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장관이 가는가 하면 또 해수부에서는 양어장 그물이 전부 떠내려가고 고기가 폐사하고 해서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보호를 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만 달랑 떼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이 점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小委員長 權五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관계는 거의 저희들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농림부 상대로 농작물만 심의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金洪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농민과 어민의,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형평성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심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 재해보험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또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입법으로 내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입법으로 내든지 해서 별도로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洪春委員**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검토가 충분히 안 되고 이랬는데 어차피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는 두 개 부처를 관장하기 때문에 항상 농어업을 같이 취급합니다. 또 성격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령 농작물및수산물재해보험법이라 해 가지고 이 보험사업자를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수산업협동조합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그 대상품목에 어장, 이렇게 조금만 수정해서 넣으면 법 하나로 다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민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법이 되면 불평등하다, 왜 어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필히 제기될 터인즉 이것을 이렇게 덜렁 통과시키기보다는 조금 유보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 법에다가 수산문제를 넣어서 수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金洪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權五乙 위원장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에 관해서 깊이 참작을 해서 뭐 당장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정부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축조심사 다 끝내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두는 것을 남겨두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朴煥太委員**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지요.

○**金洪春委員** 이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 다른 법을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1월8일, 9일에도 통과시키는 우리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몇 개 조문만 손대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당무자들 불러 가지고 너희 수산관계는 어떻게 수협이 하면 되겠느냐 하면 수협이라고 넣고 대상은 대충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면 두서너 조문만 고치면 이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정부로 하여금 법을 내게 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지 않느냐 싶어요. 기왕 제정법인데…….

○**委員長 咸錫宰** 李相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培委員**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축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수산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모두가 다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성장작물이나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 피해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보험으로 다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양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長善委員**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鄭長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長善委員** 내용에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미 예산을 지금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산업을 넣었을 때 이것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委員長 咸錫宰** 장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農林部長官 韓甲洙** 정부에서 잠깐 말씀 올리겠

습니다.

지금 이 농업재해보험법은 저희가 정부에서 79년부터 스테디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죽해서 92년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도상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통계축적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李相培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까는 농작물의 피해통계라든지 수산물의 피해통계는 통계측정방법도 다르고 육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통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림부가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이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되니까 해수부도 지금 입법을 위한 연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분은 관계부처에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지금 2001년도 예산과 연계된 법령이 되어 가지고 오늘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金洪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뒤로 축조심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洪春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위원회는 농민과 어민을 다 취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수산 편을 든다기 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저런 법은 제정하고 왜 저런 법은 제정 안 했느냐 하는 비난에 직면할 터인즉 이것이 지금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다니까 본 위원도 의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그 뜻을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해서 농민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보호법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보험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개정하든지 또 수산관계 특수성이 따로 있다면 그와 관련된 것을 내어서 형평을 맞추라는 취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알겠습니다.

金洪春 위원님의 말씀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충분히 그 취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에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17조 벌칙, 제18조 양벌규정, 제19조 과태료 등 벌칙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부칙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 제5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의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제11항의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해서 韓甲洙 농림부장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 韓甲洙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법안에 따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01년3월1일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등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2001년1월1일부터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는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한우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인증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번 동해안 지역에 발생하였던 대형 산불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오히려 감사합니다. 법 집행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韓甲洙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부 소관 법률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자리를 이동해서도 괜찮겠습니다.

- 12.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방호·장성원·장정언·정철기·장장선·문석호·강현욱·박용호·최선영·박희태·김용학·주진우·박재욱·이정일·김경천·김원기·전갑길·윤철상·정세균·이낙연·김효석·윤한도·김광원·이용삼 의원 발의)(계속)
- 13. 港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4.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5.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6.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7. 漁港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8.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19. 수산물품질관리법안(정부제출)(계속)

(17시05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해양수산부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표자 金泳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제안한 제13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제14항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제15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제16항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제17항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제18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제19항 수산물품질관리법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權五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 權五乙 위원입니다.

12월13일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중 오늘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해양수산부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金泳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수협이 부실에 대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등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李方鎬 위원님께서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신용부문과 경제부문간에 너무 철저한 방화벽을 치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대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許泰烈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李方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 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여덟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고 그 외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이나 부령에서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부문도 경제부문과 같이 대표이사과 비상임이사는 총회,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및 해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용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

추천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회장 추천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행령에 반영할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시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와 지도관리부문간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령에서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교류 방침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경제사업부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용부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경제부문과 같이 각각 4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용부문에서 타 사업부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로는 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회원조합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산업관련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4개 사항을 정할 예정이며 특히 네 번째 기타 사항을 정할 때 가급적 이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신용부문에서 타 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측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은행법 제35조, 제38조제1호, 제51조의 적용시기를 2001년1월1일에서 2001년7월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재산분리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수협중앙회장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재산분리 및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실시시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하며, 회원조합의 출자금은 지도부문의 자본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

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예선사용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 항만시설로 추가 규정되는 어항시설에 관광·휴게시설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어항법상 관광·휴게시설 중 일부 시설인 낚시어선·요트·윈드서핑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어촌민속관을 항만친수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해운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조합에 출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당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동 조항의 신설로 인해 현재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운조합의 성격이 영리법인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운조합의 비영리법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인 안 제11조의3,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7월 개정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미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

록 시행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검사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지정을 받은 항로표지 검사기관에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 시설·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할 기관이 없고 이미 소정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유시설·장비를 무상임대받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에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검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령의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육지소규모어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2·3종 어항으로 되어 있는 어항의 명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어항은 현재 3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어항을 지정한 후 그 개발이 부진하여 완공률이 21%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어항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지방어항의 확대를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항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육지소규모항, 즉 개정안의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실하게 운영되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이 법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는 바 현행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산분야의 유일한 위원회이며 그 위원들은 수산분야 전문가로서 어업분쟁시 수산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계속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수산물검사법 및 수산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와 가공산업육성 등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한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산물검사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사생략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대로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해양수산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權五乙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안은 제정법으로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春委員 해양수산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농림부 법안심사를 하면서 농림부가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태풍, 해일, 적조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양어장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 수산물에 대한 보험법은 만들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농림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연구를 해서 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구가 미진한지 아직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이 볼 때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어민의 권익옹호에 매우 태만하다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수산물재해보험법을 내시든지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농수산물재해보험법안으로 개정하는 안을 내시든지 해서 어민도 평등하게 권익 보호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통과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보면 보험사업자로 농협과 보험업자 이렇게 정하고 또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산업자들도 정말 피해가 큰데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난 뒤 누차 얘기를 하지만 과거 수산청이 있을 때보다도 어민들이 무슨 곤란을 당했을 적에 관심도가 낮다 하는 비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이러면 낙과현상이니 벼현상이니 이런 데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이 다녀가고 이러는데 바닷가에 무슨 태풍이 와서 휩쓸고 가서 고기가 다 죽고 어구가 다 파손되고 이래도 옛날 수산청일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민과 어민이 동등하게 정부의 보호를 받고 해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런 참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는데 즈음해서 어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어민도 같이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수산업협동조합도 이런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에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종의 위험이라는 것이 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이 보험위험의 산정이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가입자 숫자나 유사위험의 발생 건수하고 수산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냥 행정적인 판단만으로는 좀 어렵고 해서 2001년 예산에 연구과제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 보험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의 산정이라든지 최소한의 소위 가입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를 면밀히 잘 파악해 가지고 다소 요건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보험제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洪春委員** 취지를 잘 알겠고 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다만 이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이제 곧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과제로 있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부지하세월로 지나도 어민이 참을 수 있지만 농민의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이런 보험사업이 실시되는데 왜 어민은 안 되느냐 하는 조급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이 부지하세월로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태풍이 오고 했을 때에 으레 생기는 것이 남해안에 보면 굴이니 물고기 양식하는데 떠내려간단든지 폐사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독려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위원님 취지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보험이 성립되려고 하면, 보험재단이 성립되려고 하면 동일 동종의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농업과 어업이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金洪春委員** 그것은 농업과 어업이 똑같은 수는

없지만 아마도 농작물재해보험법도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동종 동류의 사고가 계속 된다는 것은 이것도 아마 문제가 있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되었다시피 이것도 우리 盧 장관님이 훌륭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법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어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委員長 咸錫宰** 金洪春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통과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委員長 咸錫宰** 金泳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泳鎭委員** 장관님께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도 밝히셨고 또 지금 金洪春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장의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업협정 이후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방향도 바뀌고 그랬는데 가령 어병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상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어병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도 물론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현장에서 어민들이 어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데는 그것을 순응한다라기 보다는 아주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어의사제도가 없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가지고 어의사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업부문 특히 기르는 어업부문에 대한 동종 동류의 집단폐사나 이런 문제에서 제일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식어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 어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손해 나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

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자금 같은 것을 내려보낸 경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문제는 조금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서 생각 보태는 것보다는 지금 아주 金洪春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되는 쪽으로 가급적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朴燾太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燾太委員** 아주 쉬운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뽑는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뽑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수협법 말씀이십니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기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의 책임을 지는 쪽이고 비상임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직무를 감독·감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출기관을 달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朴燾太委員**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임이사는 하위기관인 이사회에서 뽑고 비상임이사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뽑는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일반회사에도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수협법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회사에도 요즈음 사외이사가 많지 않습니까? 사외이사라고 그럴까, 비상임이사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총회에서 선출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대체로 이사와 사외이사까지를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마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小委員長 權五乙** 농협조직하고 수협조직하고 다르지만 상임이사는 농협조직으로 보면 상무에 해당되고 이사는 농협조직의 조합장들이 한 이사회 조직이 되고 그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농협조직에는 현재 상임이사라는 제도가 없이 상무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상무이사 아닌가요?

○小委員長 權五乙 그냥 상무로 씁니다.

상무라는 직책하고 여기 상임이사 직책이 대칭 되게 같은 직책이라는 입장이고 농협의 이사는 농협조합장들이 자기의 총회에서 뽑아 이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상임이사가 농협의 이사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라든지 조합원을 대표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집행하고 일하는 그런 기능이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朴熿太委員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가 이사회 구성원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朴熿太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 말씀은 이해를 내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조금 어느 한쪽은 감시·감독 기능이 있으니까 총회에서 선출하고 똑같은 이사인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熿太委員 무슨 직무가 무엇이 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수협법에서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이라든지 업무집행기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합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도 맞지 않는 좀 혼란된, 절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수협의 금융부문이 조합의 업무보다는 대단히 비대해지면서 그 부분이 부실의 큰 원인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부문은 일선조합의 신뢰유지를 위해서 법인을 분리하지 않지만 회계를 독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원리에 따라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쪽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본시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투입할 수 없는 구조로 우리 법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합에다 투입하다 보니까 금융부문에 한해서 주식회사적 성격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식개념이 없으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람이 경영을 정상화할 때까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은행장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소이사회

를 만들어 가지고 소이사회 권한을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점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실 것입니다. 은행법이 수협법안에 끼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熿太委員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정부안에서는 이 상임이사를 아예 이사회에서도 선출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는 누가 선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朴熿太委員 정부 원안에서는 어디서 선출하도록 한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소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행장추천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수협법에 은행법의 일부가 지금 이래적으로 끼어 들어와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熿太委員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말하자면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대표이사가 전부 자기 스텝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책임경영을 해서 진퇴를 명확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원안에 의하면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총회도 안 되고 이사회도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소이사회에서 선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이 소위 금산법에 의해서 공적자금 투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투입할 수 없으므로 수협의 자회사로서 신용부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 조합원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일선조합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서로 부딪치고 논쟁이 생기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협법 안에 소위 독립법인의 기구와 같은 그런 은행법 소정의 기구를 포섭하면서 절충이 이루어진 것이 이 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朴熿太委員 이 수정안이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소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이네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朴煥太委員** 좌우간 조직법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상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네요.

○**元喆喜委員** 장관님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선거제로 하는 것에서 뽑히는 비상임이사는 선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되고 전문경영인을 선거에 의존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뽑아내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근거법률들은 수산물검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업법 이렇게 여러 개의 법률에 분산된 내용을 한 개 법률안으로 통합 규정하고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은 제정법안의 형식이나 내용은 각 개별법을 통합하는 수준이 주내용이 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축조심회는 간략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제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1장 총칙규정인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3장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

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규정인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인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8장 보칙규정인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9장 벌칙규정인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부칙규정인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향만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향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어항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산물품질관리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辛卿植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예, 말씀하세요.

○辛卿植委員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납뿔게 때문에 파동이 많았잖아요?

그후에 내가 TV뉴스에서 보니까 납뿔게를 수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부분 샘플조사를 하고 남은 짐이다 해서 전부 창고에 쌓아 놓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무조건 보관해 놓았나 봐요.

그래서 수입상인지 하여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측에서 검사를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게 하든지 방출을 하게 하든지 뭘 해주어야지 가면 보건복지부 다르고 해양수산부 다르고 서로 밀고 밀어 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 사람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TV뉴스를 내가 보았어요.

이것이 품질관리에 좀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시 그 물건의 폐기·반송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식약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수부 수산물 검사소에서는 그 당시 검사를 해서 납이 든 상자와 전혀 납뿔게가 들지 않은 상자를 분리해서 든 상자는 폐기조치하고 들지 않은 상자는 들지 않았다고 식약청에 통보해 주었는데 식약청에서 이것을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여론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부분을 알고 다시 재차, 삼차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물건이므로 내주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좀 잘 안되다가 그 뒤에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서 그 물건들은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검사인력은 부족하고 물건은 많아서 통관검사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수산물품질관리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통과 즈음해서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 소관 법률안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률안이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 등 해양수산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들인 만큼 당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관해서는 해양수산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權五乙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金龍學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등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특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權五乙委員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말씀하세요.

○權五乙委員 지난 상임위 때 우리가 국정감사시 농협, 축협 통합하고 난 다음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문제 한번 거론를 했었습니다.

오늘 농협중앙회 회장이나 대표가 나오서 가지고 국감에서 발언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연락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오늘 안 나왔습니까?

연락 못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때 중앙회 회장이 직접 오서 가지고 왜 국감 때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시정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직접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 위원장이 들은 바에 의하면 12월까지는 중앙회의 상환준비에치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權五乙委員 11월말까지 하고 12월부터는 같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委員長 咸錫宰 내가 듣기에는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權五乙委員 속기록에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오히려 이자율 차이를 더 냈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상환준비에치금 이율관계는 12월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같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중앙회장이 여기 출석하셔서 가지고 설명하고 시정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辛卿植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辛卿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辛卿植委員 신문에 보니까 해양수산부 인사를 모두 했는데 오늘 새로 바뀐 국장들이 왔으면 인사라도 시켜서 이 다음에 얼굴이라도 알고 얘기를 해야 할텐데 그냥 끝나려고 해서 인사를 좀 받고 일어났으면 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죄송합니다.

우리 수산자원국장이 차관보로 보임되었고 종전의 차관보는 기획실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국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金性奎 감사관은 안전관리관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관 하던 徐廷皓 국장이 해운물류국장으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갔던 姜武賢 국장이 수산정책국장으로 보임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밖에 한두 명 더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咸錫宰 다음 번 위원회 회의 때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出席委員(18人)

姜賢旭	權五乙	金洪春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琥	朴燾太
孫泰仁	辛卿植	元喆喜	李相培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崔善榮
咸錫宰	許泰烈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회관	李元鐸

○政府側參席者

농림부				
장관	韓甲洙			
차관	金東根			
기획관리실장	安鍾云			
농업정책국장	丁鶴秀			
식량생산국장	崔燾一			
국제농업국장	崔龍圭			
농촌개발국장	孫貞秀			
농산물유통국장	蘇萬鎬			

---

축 산 국 장	金 周 秀
산 립 청	
청 장	申 洵 雨
임 업 정 책 국 장	鄭 光 秀
사 유 립 지 원 국 장	曹 連 煥
국 유 립 관 리 국 장	徐 承 鎮
임 업 연 구 원 장	盧 義 來
해양수산부	
장 관	盧 武 鉉
차 관	洪 承 湧
차 관 보	朴 宰 永
기 획 관 리 실 장	金 成 洙
해 운 물 류 국 장	徐 廷 皓
항 만 국 장	金 英 南
수 산 정 책 국 장	姜 武 賢
안 전 관 리 관	金 性 奎

**【報告事項】**

○議案回附

선원법증개정법률안

(12월16일 정부제출)

12월18일 회부됨.